

1996년도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決算檢査意見書

忠淸北道決算檢査委員

目 次

I. 決算檢查意見書	599
II. 歲入歲出 決算總括	601
1. 歲入歲出決算	602
가. 總 括	602
나. 一般會計	609
다. 特別會計	614
2. 移越事業費 決算	618
3. 債權 債務의 決算	620
4. 公有財産	623
5. 基金決算	624
6. 金庫決算	625
III. 決算檢查 結果	627
1. 檢查結果	628
2. 分野別檢查內譯(指摘事項)	630

I . 決算検査意見書

決算檢査意見書

충청북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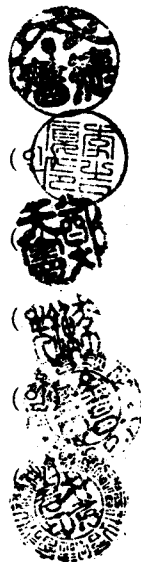
1997년 7월 23일

본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의회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1997년 6월 23일부터 15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충청북도가 제출한 1996회계년도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는 지방재정법령과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내무부 지침에서 정한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고 본 위원들이 지적한 결산검사결과 분야별검사내용(Ⅲ-2)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이월사업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각종기금,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고 있어 충청북도가 제출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적정한 결산이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

대 표 위 원	성 기 덕
위 원	이 길 하
위 원	정 천 현
위 원	이 종 선
위 원	김 창 섭
위 원	박 호 순



II. 歲入歲出決算總括

1. 歲入歲出 決算

가. 總 括

19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의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1)	세 입 결 산 액 (2)	세 출 결 산 액 (3)	비 율 (%)			세 계 잉 여 금
				1 : 2	1 : 3	2 : 3	
합 계	1,002,958,410	1,058,374,647	858,697,777	105.5	85.6	81.1	199,676,870
일 반 회 계	740,521,732	786,219,170	668,157,547	106.2	90.2	84.9	118,061,623
특 별 회 계	262,436,678	272,155,477	190,540,230	103.7	72.6	70.0	81,615,247
○ 공 영 개 발 사 업	84,956,804	86,719,817	58,405,768	102.0	68.7	67.3	28,314,049
○ 지 역 개 발 기 금	143,434,032	151,349,272	106,108,543	105.5	73.9	70.1	45,240,729
○ 의 료 보 호	20,544,385	20,584,731	20,325,343	100.2	98.9	98.7	259,388
○ 농 어 촌 소 득 개 발 기 금	3,617,880	3,617,882	3,617,000	100.1	99.9	99.9	882
○ 대 청 호 대 책	2,083,577	2,083,671	2,083,576	100.1	99.9	99.9	95
○ 증 평 공 업 단 지 조 성	7,800,000	7,800,104	0	100.1	-	-	7,800,104

(1) 歲入決算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1)	정 결 수 액 (2)	수 납 액 (3)	비 율 (%)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금
				1 : 2	2 : 3		
합 계	1,002,958,410	1,077,407,502	1,058,374,647	105.5	98.2	2,329,975	16,702,880
일 반 회 계	740,521,732	805,252,025	786,219,170	106.1	97.6	2,329,975	16,702,880
특 별 회 계	262,436,678	272,155,477	272,155,477	103.7	100.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28,390,836	238,069,089	238,069,089	104.2	100.0		
- 공 영 개 발 사 업	84,956,804	86,719,817	86,719,817	102.1	100.0		
- 지 역 개 발 기 금	143,434,032	151,349,272	151,349,272	105.5	100.0		
기 타 특 별 회 계	34,045,842	34,086,388	34,086,388	100.1	100.0		
- 의 료 보 험	20,544,385	20,584,731	20,584,731	100.2	100.0		
- 농 어 촌 소 득 개 발 기 금	3,617,880	3,617,882	3,617,882	100.0	100.0		
- 대 청 호 대 책 관 리	2,083,577	2,083,671	2,083,671	100.0	100.0		
- 증 평 공 업 단 지 조 성	7,800,000	7,800,104	7,800,104	100.0	100.0		

【檢査結果 分析】

- 일반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1,077,407,502천원으로 세입예산액 1,002,958,410천원보다 7.4%에 해당하는 74,449,092천원이 증가되었는바,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8.7%에 해당하는 64,730,293천원이 증가되고
 -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3.7%에 해당하는 9,718,799천원이 증가되었음.

- 미수납액 16,702,880천원과 불납결손액 2,329,975천원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발생되었고 특별회계는 없음.

(2) 歲出決算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1)	지출원인 행 위 액 (2)	지 출 액 (3)	비율 (%) 1 : 3	다음연도 이 월 액 (4)	집행잔액 (5)
합 계	1,002,958,410	910,746,482	858,697,777	85.6	78,776,696	65,483,937
일 반 회 계	740,521,732	720,036,119	668,157,547	90.2	58,733,233	13,630,952
특 별 회 계	262,436,678	190,710,363	190,540,230	72.6	20,043,463	51,852,985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28,390,836	164,684,444	164,514,311	72.0	12,243,463	51,633,062
- 공영개발사업	84,956,804	58,575,901	58,405,768	68.7	12,243,463	14,307,573
- 지역개발기금	143,434,032	106,108,543	106,108,543	73.9	0	37,325,489
기 타 특 별 회 계	34,045,842	26,025,919	26,025,919	76.4	7,800,000	219,923
- 의 료 보 호	20,544,385	20,325,343	20,325,343	98.9	0	219,042
- 농어촌 소득 개 발 기 금	3,617,880	3,617,000	3,617,000	99.9	0	880
- 대청호 대책	2,083,577	2,083,576	2,083,576	99.9	0	1
- 증평공업단지 조 성	7,800,000	0	0		7,800,000	0

【檢査結果 分析】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02,958,410천원에 대하여 결산액 858,697,777천원으로서 평균 85.6%('95년 86.3%)를 집행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 결산액이 90.2%('95년 88.3%)며 특별회계는 72.6%('95년 81.5%)임
- 예산현액이 전년도('95)보다 전체 56,879,056천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73,824,580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6,945,524천원이 감소 되었음.
- 집행율은 전년도 보다 전체 0.7% 감소 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9%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8.9%감소(공기업 특별회계 8%, 기타 특별회계 21%)되었는 바, 이는 기타 특별회계중 증평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계속비사업으로 '96년도에 신설되어 전체사업비 7,800,000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율이 감소된 결과임.

(3) 歲計剩餘金

(단위 : 천원)

회 계 별	계	이 월 내 역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보 조 금 잔 액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199,676,870	8,540,065	41,457,937	28,778,694	186,430	120,713,744
일 반 회 계	118,061,623	8,479,281	41,287,803	8,966,149	186,430	59,141,960
특 별 회 계	81,615,247	60,784	170,134	19,812,545	0	61,571,784
공 기 업 특 별 회 계	73,554,778	60,784	170,134	12,012,545	0	61,311,315
- 공영개발사업	28,314,049	60,784	170,134	12,012,545	0	16,070,586
- 지역개발기금	45,240,729	0	0	0	0	45,240,729
기 타	8,060,469	0	0	7,800,000	0	260,469
- 의료보호기금	259,388	0	0	0	0	259,388
- 농 어 촌 소득개발기금	882	0	0	0	0	882
- 대청호 대책	95	0	0	0	0	95
- 증평공업단지 조 성	7,800,104	0	0	7,800,000	0	104

【檢査結果 分析】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18,061,623천원으로서 전액 익년도로 이월한바 이월액중
 - 명시이월비 8,479,281천원, 사고이월비 41,287,803천원, 계속비이월 8,966,149천원이며,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86,430천원은
 - 사회개발비 39,582천원
 - 경제개발비 145,465천
 - 민방위비 1,383천원 으로
 -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59,141,960천원은 세입초과 징수액과 예산절감,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등 집행잔액임.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5개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81,615,247천원으로서 사고이월비 170,134천원, 명시이월비 60,784천원 계속비이월 19,812,545천원이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 61,571,784천원이 됨.

나. 一般會計

(1) 歲入

(단위 : 천원)

과 목 별	예 산 액 (1)	징 수 결정액 (2)	수납액 (3)	비 율 (%)			불 납 결손액 (4)	미 수 납 액 (2-3-4)
				1 : 2	1 : 3	2 : 3		
합 계	740,521,732	805,252,025	786,219,170	108.7	106.1	97.6	2,329,975	16,702,880
지 방 세	147,741,000	214,547,844	196,867,256	145.2	133.2	91.7	2,270,336	15,410,252
취 득 세	59,968,000	86,261,905	82,197,303	143.8	137.0	95.2	38,505	4,026,097
등 록 세	73,329,000	96,313,514	96,067,532	131.3	131.0	99.7	3,056	242,926
면 허 세	5,174,000	7,158,591	6,879,679	138.3	132.9	96.1	4,605	274,307
공동시설세	4,900,000	5,654,100	5,431,637	115.3	110.8	96.0	12,344	210,119
지역개발세	1,270,000	1,363,687	1,363,687	107.3	107.3	100.0		
과년도수입	3,100,000	17,796,047	4,927,418	574.0	158.9	27.6	2,211,826	10,656,803
세외수입	175,431,120	184,828,799	183,476,532	105.3	104.5	99.2	59,639	1,292,628
경상적수입	12,433,427	21,698,173	21,647,893	174.5	174.1	99.7	3,574	46,706
임시적수입	162,997,693	163,130,626	161,828,639	100.1	99.2	99.2	56,065	1,245,922
지방교부세	155,819,990	146,537,019	146,537,019	94.0	94.0	100	0	0
지방양여금	71,784,581	71,784,425	71,784,425	99.9	99.9	100	0	0
보 조 금	179,245,041	177,303,938	177,303,938	98.9	98.9	100	0	0
지 방 채	10,500,000	10,250,000	10,250,000	97.6	97.6	100	0	0

【檢査結果 分析】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740,521,732천 원에 대하여 108.7%에 해당하는 805,252,025천 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
 - 예산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64,730,293천원의 내역은
 - 아파트 분양 및 부동산 거래증가와 자동차의 꾸준한 증가등으로 지방세가 66,806,844천원 초과 징수되었으며,
 - 세외수입에서도 9,397,679천원이 초과징수된 반면,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이 11,474,230천원이 감소되었음.
 - 징수결정된 805,252,025천원 중 97.6%에 해당하는 786,219,170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9,032,855천원 중 결손처분된 2,329,975천원을 제외한 16,702,880천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음.
 - 지방세 15,410,252천원
 - 세외수입 1,292,628천원
 -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 2,329,975천원은
 - 지방세 2,270,336천원과 세외수입 59,639천원으로 세원별 내역은
 - 취득세 38,505천원
 - 등록세 3,056천원
 - 면허세 4,605천원
 - 소방공동시설세 12,344천원
 - 과년도수입 2,211,826천원
 - 세외수입 59,639천원이며

- 불납결손사유는
- 무 재 산 1,812,404천원 (77.8%)
- 거소불명 138,054천원 (5.9%)
- 시효완성 379,517천원(16.3%)으로나타나고 있음.

○ 미수납액 16,702,880천원은 징수결정액의 2.1%로서 그 사유는

- 징수유예 175,798천원 (1.1%)
- 거소불명 461,669천원 (2.8%)
- 재력부족 2,642,852천원 (15.8%)
- 납세태만 1,677,708천원 (10.0%)
- 재산압류 11,697,340천원 (70.0%)
- 기 타 47,513천원 (0.3%)

이는 재산압류, 재력부족, 납세자태만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96세입결산은 예산액보다 8.7% 상회하는 징수결정을 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97.6%의 수납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차질없는 세수확보를 기하였다 하겠음.

(2) 歲 出

1996년도 지출액은 668,157,547천원으로써 예산규모 740,521,732천원의 90.2%이며 세출예산집행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1)	지출원인 행 위 액 (2)	지 출		다음연도 이 월 액 (4)	불 용 액 (5)
			금 액 (3)	비율 (%)		
합 계	740,521,732	720,036,119	668,157,547	90.2	58,733,233	13,630,952
일 반 행 정 비	67,673,298	64,934,820	64,716,681	95.6	662,089	2,294,528
사 회 개 발 비	207,765,802	203,669,570	191,746,748	92.3	14,873,697	1,145,357
경 제 개 발 비	343,283,230	336,422,340	298,788,279	87.0	40,893,897	3,601,054
민 방 위 비	27,777,036	27,107,105	25,003,555	90.0	2,303,550	469,931
지원 및 기타경비	94,022,366	87,902,284	87,902,284	93.5	0	6,120,082

- 일반회계 예산액은 677,031,922천원 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3,489,810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40,521,732천원임
세출예산 전용액도 예산액의 0.01%인 837,651천원이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4,697,115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충청북도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설계비(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족분)외 21건임.

- 다음연도 이월액 58,733,233천원은 예산현액의 7.9%로서

- 명시이월은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 계획 수정용역 외 14개 사업으로 8,479,281천원이며,
- 사고이월은 공기부족에 따른 충청도정 100년사 발간 용역외 46개 사업으로 41,287,803천원이며,
- 계속비이월은 도립 옥천전문대학 건립과 오창과학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 8,966,149천원이 이월 되었음.

○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13,630,95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8%에 해당되며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 계획변경 취소	1,468,969천원
◦ 집행사유 미발생	1,032,904천원
◦ 예산절감	84,589천원
◦ 집행잔액	5,888,366천원
◦ 보조금 집행잔액	186,430천원
◦ 기타(예비비)	4,969,694천원 이었음

○ 세출결산은 도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고

○ 예산의 이용 및 이체와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었음.

다. 特別會計

(1) 歲 入

○ 공영개발사업의 5개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272,155,47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2,155,477천원으로서 100%징수되었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1)	징 수 결 정 액 (2)	수납액 (3)	비 율 (%)			불 납 손액	미 수 액
				1 : 2	1 : 3	2 : 3		
합 계	262,436,678	272,155,477	272,155,477	103.7	103.7	100	0	0
공 영 개 발 사 업	84,956,804	86,719,817	86,719,817	102.1	102.1	100	0	0
지 역 개 발 기 금	143,434,032	151,349,272	151,349,272	105.5	105.5	100	0	0
의 료 보 호 기 금	20,544,385	20,584,731	20,584,731	100.2	100.2	100	0	0
농 어 촌 소 득 개 발 기 금	3,617,880	3,617,882	3,617,882	100.0	100.0	100	0	0
대 청 호 대 책 관 리	2,083,577	2,083,671	2,083,671	100.0	100.0	100	0	0
증 평 공 업 단 지 조 성	7,800,000	7,800,104	7,800,104	100.0	100.0	100	0	0

○ 공영개발사업등 6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272,155,477천원으로 세입예산액 262,436,678천원 보다 3.7%에 해당하는 9,718,799천원이 증가되었는

바, 그 내역은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763,013 천원 (2.1%)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7,915,240 천원 (5.5%)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0,346 천원 (0.2%)
-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2 천원
- 대청호대책관리특별회계 94 천원
- 증평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104 천원이 초과 징수결정 되었음.

(2) 歲 出

○ 공영개발사업의 5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190,540,230천원으로서 예산규모의 72.6%이며, 세출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다음년도 이 월 액	불 용 액
			금 액	비율 (%)		
합 계	262,436,678	190,710,363	190,540,230	72.6	20,043,463	51,852,985
○ 공영개발사업	84,956,804	58,575,901	58,405,768	68.7	12,243,463	14,307,573
○ 지역개발기금	143,434,032	106,108,543	106,108,543	73.9	0	37,325,489
○ 의료보호기금	20,544,385	20,325,343	20,325,343	98.9	0	219,042
○ 농어촌 소득 개 발 기 금	3,617,880	3,617,000	3,617,000	99.9	0	880
○ 대청호 특별 대 책	2,083,577	2,083,576	2,083,576	99.9	0	1
○ 증평공업단지 조 성	7,800,000	0	0	-	7,800,000	0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의 5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262,436,678천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90,540,230천원으로서 72.6%를 집행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4개 특별회계의 불용액을 보면,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불용액 219,042 천원은
 - 예산집행잔액 11,027 천원
 - 사유미발생 440 천원
 - 예비비잔액 207,615 천원이며
-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불용액 880 천원은
 -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880 천원이며
-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특별회계는
 - 예산집행잔액 1천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 중평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계속비사업으로 '96년도에 신설되어 전체 예산이 이월되므로써 불용액이 없었음

2. 移越事業費 決算

(단위 : 천원)

회 계 별	이 월 내 역	종 류	건 수	금 액	합 계
계	명 시 이 월	용 역	7	2,458,884	8,540,065
		공 사	6	5,716,162	
		기 타	4	365,019	
	사 고 이 월	용 역	9	2,957,315	41,457,937
		공 사	30	37,871,175	
		기 타	10	629,447	
	계 속 비 이 월	용 역	-	-	28,778,694
		공 사	4	28,778,694	
		기 타	-	-	
일 반 회 계	명 시 이 월	용 역	7	2,458,884	8,479,281
		공 사	4	5,655,378	
		기 타	4	365,019	
	사 고 이 월	용 역	9	2,957,315	41,287,803
		공 사	28	37,701,041	
		기 타	10	629,447	
	계 속 비 이 월	용 역	-	-	8,966,149
		공 사	2	8,966,149	
		기 타	-	-	
특 별 회 계 (공기업 포함)	명 시 이 월 (건설개량이월)	용 역	-	-	60,784
		공 사	2	60,784	
		기 타	-	-	
	사 고 이 월	용 역	-	-	170,134
		공 사	2	170,134	
		기 타	-	-	
	계 속 비 이 월	용 역	-	-	19,812,545
		공 사	2	19,812,545	
		기 타	-	-	

【檢査結果 分析】

○ 一般會計

충청북도 일반회계 '96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대비 7.9%(58,733,233천원)로 전년도 9.5%(63,489,803천원)보다 1.6%(4,756,570천원)감소하였음.

- 명시이월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는 금액은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용역비의 14건의 사업비 8,479,281천원으로 국가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작업의 지연으로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작업도 순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는 금액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공기부족)등 47건의 사업비 41,287,803천원임

- 계속비이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는 금액은 도립옥천 전문대학 건립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과 증평 공업단지조성사업으로 8,966,149천원임.

○ 特別會計

충청북도 특별회계 '96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7.6%(20,043,463천원)로 전년도 8.5%(23,836,352천원)보다 0.9%(3,792,889천원)감소하였음

- 명시이월비 : 2건 60,784천원

- 사고이월비 : 2건 170,134천원

- 계속비이월비 : 2건 19,812,545천원

3. 債權債務 現在額

가. 債 權

(단위 : 천원)

구 채 권 분 별	'95말 현 재 액	'96 발 생 액	'96 소 멸 액	'96말 현 재 액
합 계	244,907,513	178,075,030	137,885,327	285,097,216
일 반 회 계	21,001,398	38,399,371	27,935,966	31,464,803
특 별 회 계	223,906,115	139,675,659	109,949,361	253,632,413
◦ 지역개발기금	215,015,399	107,452,650	81,090,357	241,377,692
◦ 공영개발사업	217,200	28,600,147	28,817,347	0
◦ 의료보호기금	25,681	5,862	11,657	19,886
◦ 농 어 촌 소득개발기금	8,647,835	3,617,000	30,000	12,234,835

【檢査結果】

- '95년도말 채권현액은 244,907,513 천원으로
 - 일반회계 21,001,398 천원
 - 특별회계 223,906,115 천원이며

- '96년도 발생액은 178,075,030 천원으로
 - 일반회계 38,399,371 천원
 - 특별회계 139,675,659 천원이며

- '96년도 수입 137,885,327 천원은
 - 일반회계 27,935,966 천원
 - 특별회계 109,949,361 천원이고

- '96년도말 현재액은 285,097,216 천원으로
 - 일반회계 31,464,803 천원
 - 특별회계 253,632,413 천원이었음.

나. 債 務

(단위 : 천원)

구 분	'95말 잔액	'96행위액	누 계	'96상환액	'96말현재액
계	263,527,662	90,909,573	354,437,235	66,572,202	287,865,033
지 방 채	253,550,488	90,552,733	344,103,221	57,928,694	286,174,527
채무부담행위	7,000,000	0	7,000,000	7,000,000	0
해 외 차 관	2,977,174	356,840	3,334,014	1,643,508	1,690,506

【檢査結果】

- '96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287,865,033 천원으로
 - 지 방 채 286,174,527 천원과
 - 해 외 차 관 1,690,506 천원이며

- 당해년도에 발생된 채무는 90,909,573 천원이었고 상환소멸된 채무는 66,572,202천원이었음.

4. 公有財産 現況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95 년 도 말		'96 년 도 말		증 감 액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계		347,981,906천원		364,968,594천원		16,986,688천원
토 지	235,448,000m ²	287,234,608	234,474,000m ²	287,977,542	△ 974,000	742,934
건 물	142,577m ²	17,148,768	159,500m ²	33,392,522	16,923	16,243,754
임 목 죽	879,863m ²	43,518,530	879,863m ²	43,518,530	0	0
기 타		80,000		80,000	0	0

※ 기타란은 종류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수량표시가 불가함.

【檢査結果】

- '95년도말 공유재산은 토지 235,448,000m², 건물 142,577m²등으로 재산 총평가액은 347,981,906천원이었으나.
- '96년도말에는
토지 234,474,000m², 건물 159,500m²등 총평가액이 364,968,594천원으로 155%가 증가되었음.

5. 基金運營 決算

<積立基金 運營 現況>

(단위 : 천원)

구분 종류	적립액			'96년도 사용액	'96년도말 현재액	근거
	'95년까지	'96년도분	계			
계	27,210,381	34,137,313	61,347,694	22,536,937	38,810,757	
문화예술회관기금	4,979,327	688,660	5,667,987	326,987	5,341,000	도문화진흥기금 조성설치운영조례
생활보호기금	74,170	8,501	82,671	0	82,671	생보법제37조 및 도운영관리조례
저소득주거주택기금	1,002,017	55,771	1,057,788	55,771	1,002,017	도저소득주거주택기금조례
재해구호기금	5,017,225	1,003,629	6,020,854	35,705	5,985,149	재해구호법 제15조
청소년자립기금	107,660	19,351	127,011	0	127,011	도청소년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청소년장학기금	21,959	3,983	25,942	4,000	21,942	도청소년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지역1명품육성기금	0	400,000	400,000	400,000	0	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조례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	3,049,218	421,083	3,470,301	342,000	3,128,301	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규정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4,447,681	29,292,670	33,740,351	18,131,400	15,608,951	도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조례
노인복지기금	218,471	253,466	471,937	0	471,937	노인복지법 제4조
식품진흥기금	3,466,419	1,415,344	4,881,763	1,473,374	3,408,389	식품위생법
중소기업구조개선기금	4,684,991	541,286	5,226,277	1,761,000	3,465,277	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증평출장소)	(141,243)	(33,569)	(174,812)	(6,700)	(168,112)	
저소득주거주택기금	128,669	16,166	144,835	6,700	138,135	본청분과 동일
청소년자립기금	12,574	17,403	29,977	0	29,977	본청분과 동일

상기적립금은 적법하게 적립되었으나, 일부 기금이 관리방법을 규정한 조례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기금의 관리 및 보고 방법을 일원화하도록 지적한 사례가 있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잔액증명과 상이없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음.

6. 金庫決算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세 계 잉여금	잉 여 금 처 분 내 역		
					이 월 사업비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1,058,374,647	858,697,777	199,676,870	78,776,696	186,430	120,713,744
일 반 회 계		786,219,170	668,157,547	118,061,623	58,733,233	186,430	59,141,960
특 별 회 계	소 계	272,155,477	190,540,230	81,615,247	20,043,463	0	61,571,784
	의료보호기금	20,584,731	20,325,343	259,388	0	0	259,388
	농어촌소득개발	3,617,882	3,617,000	882	0	0	882
	대청호 특별대책	2,083,671	2,083,576	95	0	0	95
	증평공업단지조성	7,800,104	0	7,800,104	7,800,000	0	104
	공 영 개 발	86,719,817	58,405,768	28,314,049	12,243,463	0	16,070,586
	지역개발기금	151,349,272	106,108,543	45,240,729	0	0	45,240,729

【檢査結果】

○ 一般會計

- 총 수입액이 787,434,922천원 이었으나 과오납금 1,215,752천원을 반환하고 실수납액은 786,219,170천원 이었고
- 총 지출액은 669,414,466천원이었으나 지출금액중 1,256,919천원을 반납 받음으로써 실지급액은 668,157,547천원으로 118,061,62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特別會計

- 공영개발사업의 5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272,155,477천원이었고, 총세출결산액은 190,540,230천원으로 81,615,247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III. 決算檢查結果

1. 檢 査 結 果

【總 評】

-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은 총 예산현액 1,002,958,410천원 대비 수납액 1,058,374,647천원, 지출액 858,697,777천원으로 본년도 세계잉여금은 199,676,870천원으로 나타났는바,

- 그중 명시이월비 8,540,065천원과 사고이월비 41,457,937천원,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86,430천원, 계속비이월 28,778,694천원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은 120,713,744천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음.

- 이를 전년도('95)결산과 비교하여 보면
 - 세입은 978,547,267천원에서 1,058,374,647천원으로 79,827,080천원이 증가하였고
 - 세출은 816,009,879천원에서 858,697,777천원으로 42,687,89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사고이월사업비는 '95년도 49,830,737천원에서 '96년도 41,457,937천원으로 감소하였고 대부분 공기부족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 인정되나, 향후 사업시기 조정등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망됨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74,900,417천원에서 '96년 120,713,744천원으로 45,813,327천원 증가하였음.

<歲入決算은>

가. 一般會計는

예산현액 740,521,732천원의 106.2%인 786,219,170천원이 수납 되었는바,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보존재원이 395,625,382천원으로 50.3%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 할 수 있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에서 33.2% 세외수입에서 목표액보다 4.5%나 초과 징수하였슴은 세수증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 하겠음.

나. 의료보호기금등 6개 特別會計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62,436,678천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72,155,477천원으로 103.7%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歲出決算은>

가. 一般會計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40,521,732천원중 668,157,547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율은 '95년 88.3%보다 1.9% 높은 90.2%가 되었으며, 건전재정운명을 위하여 불요불급 사업의 억제 및 경상경비의 절감등 건측재정운명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판단됨

나. 特別會計

세출부분 결산은 예산현액 262,436,678천원중 190,540,230천원이 지출되어 72.6%가 집행되었는바, 의료보호, 농어촌소득개발기금, 대청호특별대책, 경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결산이 되었다 사료되며, 중평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계속비사업으로 전액(7,800,000천원)이 유택리 하였음.

2. 分野別檢査內譯(指摘事項)

세입과목분류 부적정

현 황

○ 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 '96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 세입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금액	세입과목	정당세입과목
계		3,694		
• 자동차관리	통신회선 사용료	875	기타잡수입	기타사용료
•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통합관리 시스템	전기사용료	2,819	"	"

지적사항

- 징수관은 세입을 징수결정할 때 세입과목을 정확히 분류, 세입금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하나, 사용료수입인 자동차관리 통신회선사용료 등 2건 3,694천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과목을 부적정하게 분류하였음.

조치의견

- 징수결정시 세입과목 분류에 정확을 기하기 바람.

국고보조금 예산 미계상

현 황

<예산 미계상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부랑인시설운영비	-	38,327	38,327

지적사항

-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내시자료에 의거 당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부랑인시설운영비 38,327천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교부지연됨에 따라 당해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못해 국고보조금을 수납, 이월처리하므로서 당초 사업추진에 차질 초래

조치의견

- 국고보조금은 조속히 내시를 받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적기에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지방세 부과처분 지연

□ 현 황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취득일자	매각일자	과세일자	압류일자	결손액	비 고
(주) 서흥건설	89. 8. 4	92. 7. 18	93. 9. 13	93. 10. 11	105	
(주) 영흥어선	91. 5. 10	92. 3. 20	92. 9. 10	92. 11. 19	156	

□ 지적사항

- 취득세 부과대상 물건을 매각할 경우 등기필통지서 및 계약서 검인과정을 통하여 신고·납부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바 납세의무성립일(비업무용토지 해당시점)이후 신고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조기에 보통정수 방법에 의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체납시 재산압류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 (주)서흥건설등 2개업체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매각일자)이후 취득세 부과 및 재산압류가 상당기간(5-14개월)지연됨으로써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법원경매 종결후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되는 등 세수결함 초래.

□ 조치의견

-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고액 부과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중점관리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취득세를 신고납부치 않을 경우 즉시 지방세를 부과하고 체납시 재산압류를 통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기 바람.

세출예산전용부적정

현황

<동식물발굴 책자발간>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재료비)	전용액 (일반수용비)			재료비 집행액	동집행잔액
	1차 (7. 20)	2차 (9. 2)	계		
432,511천원	47,973	52,000	99,973	332,464	74

※ 예산과목 : 농촌진흥, 농사시험연구, 재료비

지적사항

- 농촌진흥원이 “충북100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충북동식물을 발굴하여 책자를 발간함에 있어서 미리 사업계획을 정하여 세출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 상기와 같이 시험국 세출예산 재료비(세목)에서 2회에 걸쳐 99,973천원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는 바,
- 이는 사전 계획성 없는 무리한 운영으로 세출예산 전용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아니라 전용액 만큼 재료비 세출예산액을 과다 계상한 원인도 되었음.

조치의견

앞으로 세출예산전용 운용에 신중을 기할 뿐만아니라, 농촌진흥원 예산중 농사시험 연구비중 재료비의 예산액 책정에 전용액 정도 절감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세출예산액판단소홀

현황

<농축산사업소>

(단위 : 천원)

부서	2회추가경정예산(12.23) (감액)		동전용('96. 12. 30) (증액)		경정예산대 전용비 (%)
	과목	금액	과목	금액	
계		214,578		135,728	63.3
잠업검사소	기본급	67,418	7개세목	58,640	87.0
가축위생소	"	64,656	8개세목	34,000	52.6
종축장	"	82,504	1개세목	43,088	52.2

지적사항

- 세출예산운영에 있어서 추가경정의 사유가 발생되면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 농축산사업소에서는 직원의 봉급인 기본급을 소요액 판단 소홀로 '96. 12. 23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14,578천원을 삭감한후 부족액이 발생하여 '96. 12. 30일에 135,728천원(63.3%)을 다른 과목에서 부득이 전용하여 집행하는 등 세출 예산액 판단을 소홀히 하였음

조치의견

앞으로 모든 예산에 대하여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한 예산운영을 하기 바람.

보 조 금 교 부 의 부 적 정

□ 현 황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소 관 별	업 무 명	보조사업자	보 조 금 교 부		보조내용
			년 월 일	금 액	
자 치 행 정 과	충북100년경축 음악회	21세기기획사 (김영진)	'96. 7. 21 - 8. 7	79,800	100년경축음악 회 개최비
사 회 과	불우이웃 돕기	충북사회복지협 의회(손용섭)	'96. 12. 24	2,500	사랑의 열매 캠페인
"	"	불우이웃돕기협 의회(손용섭)	'96. 12. 27	2,400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중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교부해야 하는 바

- '96. 8. 4 「충북 100년 경축음악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흥행업을 대행하는 21세기기획사(서비스이벤트업)에게 대행비조로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 '96불우이웃돕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불우이웃돕

기추진협의회에 각각 지출한 바 이 두협의회는 대표자(손용섭)가 동일인으로 되어 있어 단일기관에만 교부함이 타당함에도 2개기관으로 분할 교부하였음.

□ 조치의견

앞으로 보조금 교부는 관계 법규에 따라 합당한 사업과 정당한 피보조자에게 교부하기 바람.

세출예산액관리운영부적정

□ 현 황

<도본청>

(단위 : 천원)

구 분	소 관 별	과 목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율(%)
		세 항	목				
집행잔액	6			596,998	285,503	311,495	52.2
	자치행정과	선거 관리	수 당	8,764	4,264	4,500	51.3
	의회사무처	의사 운영	외빈 초청 여 비	15,000	5,976	9,024	60.0
	총 무 과	인사 관리	재 료 비	5,820	2,021	3,799	65.2
	농촌진흥원	농사 시험 연 구	감 리 비	23,399	13,150	10,249	43.8
	충북 개발 사 업 소	건설 기획 운 영	보 상 금	12,920	4,950	7,970	61.6
	도 로 과	지 방 채 상 환	차관 이자	531,095	255,142	275,953	51.9
사 유 미 발생	8			5,900,597	4,800,038	1,100,559	18.7
	의회사무처	의사 운영	연 료 비	3,426	-	3,426	100
	가정복지과	가정 복지	자치 단체 경상 보조	3,260,922	3,120,922	140,000	4.2
	여성회관	여성 회관 운 영	인 건 비	299,782	226,432	73,350	24.4
	지역개발과	도시 계획 관 리	연구개발비	349,403	240,917	108,486	31.0
	경제과	노정 관리	자치 단체 경상 보조	1,083,074	803,564	279,510	25.8
	국제협력과	국제 교류	자치 단체 부 담 금	20,000	-	20,000	100
	산림 환경 연 구 소	산림 환경 연구소운영	임 차 료 토지매입비	12,000 871,990	1,744 406,459	10,256 465,531	85.4 53.3

<증평출장소>

(단위 : 천원)

구 분	소관별	과 목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율(%)
		세항	목				
집행잔액	7개실과	8	8	184,291	87,815	96,476	52.3
사유 미발생	3개실과	6	7	472,443	360,740	111,703	23.6

지적사항

- 세출예산 집행도중 여건변동,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등으로 예산집행잔액이 사전예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경정 조치하여 재원부족으로 해결치 못한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등으로 활용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바,
- 상기와 같이 예산현액의 50%이상 집행잔액이 총13건에 407,971천원, 사유미 발생 11건에 1,212,262천원이 각각 집행차 않고 불용처리 되었음.

조치의견

- 앞으로 예산계상후 여건변동, 계획의 변경취소등 불용사유가 예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재원부족으로 해결치 못한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등으로 활용하는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바람.

세출예산계속비제도활용미흡

□ 현 황

<산림환경사업소 지방수목원 조성공사(조경및토목)>

(단위 : 천원)

총공사비	공 사 예정기간	'96 집행 내역			'97이후 집행액
		계약금액	선금급 지급액	지출액	
2,772,000	'96 - '99	742,827	371,404	375,205	2,029,173

□ 지적사항

- 계속비제도는 수개년에 걸쳐 집행하는 사업을 그 총액과 년부액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계속비사업으로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후 시행하는 제도인바
 - 산림환경사업소의 수목원조성 공사는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공사로 계속비제도를 활용하여야 함에도 활용치 않고 도의회의 의결도 없이 총공사비로 발주하여 입찰집행한후 총공사비는 부기금액으로 하고 '96년도 예산액을 계약금액으로 시행하였으며
 - 공사착공과 함께 371,404천원을 선금급으로 지급하였으며 년도말에 공사공정(기성고)에 따라 기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하나 정산하지 않았음

□ 조치의견

- 수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기 바람, 선금급으로 지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년도말에 정산하기 바람.

세출예산액이중책정등예산운영관리소홀

□ 현 황

<세출예산이중계상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현 액	집행액	잔 액	이중계상액 (1회추경시)	비 고
세 항	목					
민간자본이전 (유아복지)	민간자본보조	110,000	55,000	55,000	55,000	증 평 출 장 소
민간자본이전 (축산행정)	민간자본보조	108,500	-	108,500	108,500	

<공공요금 집행잔액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현 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 고
실 과	세 항					
계		21,481	10,153	10,968	51.1	
재 무 과	지 적 관 리	6,828	3,738	3,090	45.2	증 평 출 장 소
산 업 과	농 정 관 리	570	188	382	67.0	
공업 경제과	지역경제개발	650	215	435	66.9	
	교통기획행정	5,779	2,772	3,007	52.0	
	교통안전시설	3,792	1,896	1,896	50.0	
경 제 과	민 방 위 과	3,862	1,704	2,158	55.9	

□ 지적사항

○ 증평출장소의 경우

- 세출예산성립후 추가나 경정의 요인이 발생되면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예산에 편성 경정하여야 하는바, 만일 잘못 판단하여 이중으로 계상되었으면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상기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이중계상 되었음에도 예산에 경정치 않았으며
- 공공요금의 경우 소요액 판단소홀로 인하여 상기와 같이 과다하게 세출 예산에 계상되므로써 불용액이 50%이상 발생되었음.

□ 조치의견

- 금후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실소요액만을 예산에 계상할 것이며,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97 당초 예산편성시 절감하여 적정액만 계상하기 바람.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표시부적정

□ 현 황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역>

(단위 : 천원)

용 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비 고
		증	감		
합 계	347,981,906	34,048,301	21,061,613	364,968,594	
행정 재산	291,066,205	32,304,530	16,738,991	306,631,744	
보 존 재 산	21,865	0	0	21,865	
잡 종 재 산	26,893,836	5,743,771	4,322,622	58,314,985	

□ 지적사항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의 증가란에 계상 표시한 후 잡종재산의 감소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1996년도중 농촌진흥원 등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서 잡종재산의 증감액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직접 행정재산의 감소로 처리하므로써 공유재산의 증감내역을 적정히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 공유재산의 매각시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매도증서를 발급한 날로 하여야함에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4 - 6 소재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약보증금과 중도금등 매매대금의 46.4%를 수령하고 매각처리하므로써 공유재산의 현재액을 적정히 표시하지 않고 있음.

□ 조치의견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와 처분은 반드시 잡종재산의 증감으로 표시하기 바람
공유재산의 매각시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매도증서를 발급하는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최종절차가 완료된 때로 하기 바람.

기금결산보고서작성및관리방법미흡

□ 현 황

<기금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의 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27,210	34,137	22,537	38,810
도 본 청	문화예술진흥기금의 10	27,069	34,104	22,530	38,643
중 평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의 1	141	33	7	167

※ 당해연도 말 기준 현재액과는 별도로 식품진흥기금의 용자예치금 잔액 1,835백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금잔액 49,946백만원이 있음.

□ 지적사항

- 결산보고서의 기금운용계획상 예산액이 비교 표시되지 않았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수입·지출액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었고 기금대차대조표의 작성시 출연금과 이익적립금 및 당기순이익의 구분 표시가 미흡하게 표시되는등 일부기금 결산보고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었으며
- 각종 기금의 관리방법을 규정한 조례상 일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청소년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등 기금의 관리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 조치의견

-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이 미흡한 주요원인은 기금관리 업무를 지도 총괄하는 기능이 부재한 탓으로 보이므로 기금의 담당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러한 기능을 총괄하여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개선하기 바람

- 각종 기금의 관리방법을 규정한 조례의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금의 관리 및 보고 방법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조례상 세입세출의현금으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청소년장학기금, 노인복지금은 해당 관계조례를 개정하여 세입과 세출을 관계기금출납원이 관리토록하여 기금관리와 결산보고의 일관성 및 결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바람.